



대한테니스협회 국내사업본부

정규직 공개 채용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는 대한민국 테니스 종목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채용합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1 채용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
| 채용분야 | 사무행정 / 국내사업본부 정규직 |
| 채용인원 | 정규직 1명 |
| 주요업무 | 【국내사업본부 업무】 ○ 경기기록 입력 및 증명서 발급업무 ○ 상임심판 및 심판 업무 ○ 경기인등록 관련 업무 ○ 그 외 사무처 국내 행정업무 및 담당 업무분장에 따른 사무지원 |
| 자격사항 | 【공통 필수】 ○ 대한테니스협회 인사규정 제18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단,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국내 출장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주말근무 및 지방 출장, 해외여행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제출 필요) |
| 우대사항 | ○ 엑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체육 관련 공공기관 근무경험 (예시: 체육관련 공공기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태권도진흥재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회원 시도협회) -경력 인정은 4대보험 가입된 자로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표시 제출 ○ 체육인출신 (전문 테니스선수 및 체육관련 전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²⁾ 가점 미부여(동점자 처리 시 적용) |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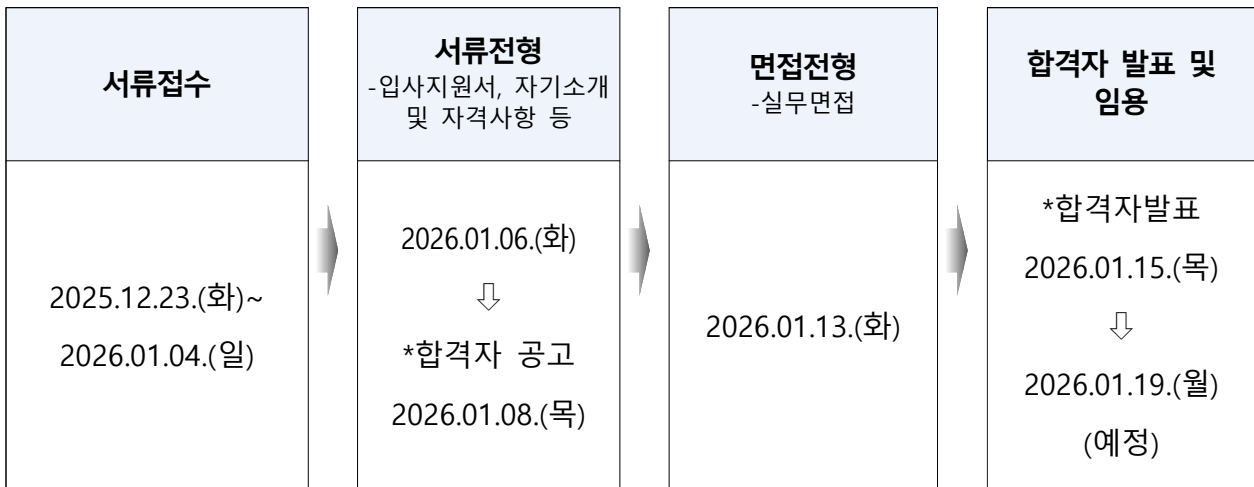
2 근무형태 및 조건

| 채용 분야 | 근무시간 | 근무지 | 근로계약기간 | 월 보수(세전) |
|-------|--|--|----------------------------|----------------|
| 정규직 | 상시근무자,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공원내 테니스경기장 1층 114호) | 채용일로부터~ *수습 임용기간 3개월 | 협의 후 결정 |

3 채용절차 [채용방법: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응시 기회 부여
- * 상기 절차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 방법

- 스포츠 산업 일자리센터 JOB SPOIS (kspo.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
- 기한 : **2026.01.04. (일) 까지**
- 문의처 : 02-420-4285, 070-4848-2897 인사회계공모부 임연희 과장

2) 취업지원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

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첨부)

| 구분 | 내 용 |
|----------|---|
| 필수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1)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양식 2) ※ 동의 후 서명 제출만 지원 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1부. ○ 병역필 혹은 병역면제 확인서 -결격사유 확인용 * 남성지원자에 한함 * 상기 순서에 준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첨부 요망. ex) 파일명 : 지원자 성명_지원분야_제출서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잡스포이즈 지원 제목 - 국내사업 정규직 지원_0000</p> </div> |
| 선택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가점)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우대사항(가점)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동점자처리 확인용 ○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
| 합격자 발표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발급) ○ 이력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사진(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 채용신체검사서 (필요에 따라) * 단,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회보서 |

- ※ **최종합격자(채용예정자) 대상 스포츠윤리센터 발급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를 통해 징계이력 확인 예정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
-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재

라. 전형단계별 가점대상(가점 상한 최대 10점 반영)

| 유형 | 가점대상 | 전형단계 | | 우대사항 | 적용기준 | 관련근거 | | | | | | | | | | | | |
|---------------|-----------------|------|----|------|---|----------------------|----|--------|----|---------------|------|--------------|----|-------------|------|-------|----|--|
| | | 서류 | 면접 | | | | | | | | | | | | | | | |
| 법정 | 장애인 | ✓ | | 5점 | • 국가장애인등록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정부권장정책 | 청년 (만15~34세) | ✓ | | 3점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서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 | | | | | | | | | | |
| 경력 | 체육인출신 | ✓ | | 3점 | • (운동선수) 전문체육 테니스선수로 우리협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 | | | | | | | | | | | | |
| | | | | 1점 | • (체육관련 전공자) 체육관련 학과 전공자로 체육, 스포츠, 체육종목 전공이 들어가야 인정 | | | | | | | | | | | | | |
| | 업무 경험 | ✓ | | 5점 | • 체육유관단체 업무 경험 -경력 합산 산정 후 기간별 차등 적용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합산</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 이하</td> <td>3점</td> </tr> <tr> <td>3개월 초과 6개월 이하</td> <td>3.5점</td> </tr> <tr> <td>6개월 초과 1년 이하</td> <td>4점</td> </tr> <tr> <td>1년 초과 2년 이하</td> <td>4.5점</td> </tr> <tr> <td>2년 초과</td> <td>5점</td> </tr> </tbody> </table> | 합산 | 점수 | 3개월 이하 | 3점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3.5점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4점 | 1년 초과 2년 이하 | 4.5점 | 2년 초과 | 5점 | |
| 합산 | 점수 | | | | | | | | | | | | | | | | | |
| 3개월 이하 | 3점 | | | | | | | | | | | | | | | | |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3.5점 | | | | | | | | | | | | | | | | |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4점 | | | | | | | | | | | | | | | | | |
| 1년 초과 2년 이하 | 4.5점 | | | | | | | | | | | | | | | | | |
| 2년 초과 | 5점 | | | | | | | | | | | | | | | | | |
| 자격 | 엑셀자격증 | ✓ | | 3점 |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대한상공회의소) • MOS 엑셀 (Microsoft / YBM) 자격증 소지자 • ITQ 엑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증 소지자 -자격 중복 제출이라도 최대 3점 적용 | | | | | | | | | | | | | |

4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테니스협회 홈페이지(<http://www.kortennis.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최종선발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등 임용의 결격사유가 드러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5.12.23.(화)



임용 결격사유

대한테니스협회 인사규정 제18조(임용 결격사유)

제18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